

한국, 미국, 중국, 노르웨이 판사들의 목격자 증언과 관련된 지식과 인식에 대한 비교연구

고 민 조

박 주 용[†]

서울대학교

본 연구는 판사들의 목격자 증언에 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국제간 비교를 통해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수행된 170명의 중국 판사, 160명의 미국 판사, 그리고 157명의 노르웨이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과 동일한 설문을 (Wise & Safer, 2004; Magnussen, Wise, Raja, Safer, Pawlenko & Stridbeck, 2008; Wise, Gong, Safer & Lee, 2010), 58명의 한국 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 분석 결과, 한국 판사들은 14개의 항목 중 5개의 항목에 대해서 80%이상의 정답률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는 58%의 정답률을 보였다. 이는 미국과 중국 판사들 보다 높았지만,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던 노르웨이 판사들보다는 낮았다. 이 결과는 Magnusse 등의 연구와 Wise 등의 3개국 판사들에 대한 연구 결과와 일관되게, 우리나라의 판사들도 목격자 증언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을 보여준다. 목격자 증언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판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목격자 증언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확인되면, 그 적용 대상을 재판에 참여하는 또 다른 주체들인 변호사와 검사 그리고 배심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주요어 : 목격자 증언, 판사, 미국, 중국, 노르웨이

[†] 교신저자: 박주용,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151-74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6-M동, Tel: 02-880-9050, E-mail: jooyoung@snu.ac.kr

폐쇄회로로 범죄현장의 관독이 어렵거나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목격자 증언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증거 중의 하나이다. 미국의 경우 매년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체포되는 용의자 수는 77,000명에 이른다 고 한다(Goldstein, Chance, & Schneller, 1989). 용의자 및 피고인 식별에 있어서 목격자 증언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억 연구 결과는 인간의 기억이 가변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기억은 부호화·저장·인출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실제 사실과는 다르게 조작되고 변형되고, 심지어는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어 있지도 않았던 일이 마치 실제 발생했던 것처럼 재구성되기도 한다. 문제는 범죄현장에 대한 목격자 증언은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히 기억해 내는 것이 다른 어떤 상황에서 보다 더 중요한데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목격자의 범죄현장에 대한 기억은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편견, 범죄자의 외모 및 행동 그리고 기억을 인출해내는 장소(예, 수사기관, 공판정), 질문하는 사람의 태도 등 여러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Halverson, Hallahan, Hart, & Rosenthal, 1997; Wegener, Kerr, Fleming, & Petty, 2000; Sternberg, 2003; Kassin, Goldstein, & Savitsky, 2003; Garrido, Masip, & Herrero, 2004; Frank & Ekman, 2004; Ask & Granhag, 2005, 2007; Colwell, 2005; Smith & Green, 2005; Czopp, Monteith, & Mark, 2006). 따라서 목격자의 범죄 현장에 대한 증언 및 범인 식별은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아, 결정적이고 영향력 있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오판을 내리는 주된 원인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Wells, Small, Penrod, Malpass, Fulero, & Brimacombe, 1998; Wells, Memon, & Penrod, 2006).

실제로 1996년 미국 법무성의 국립사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Justice)는 28개의 판결이 오판임이 발견하였다. 이 오판들은 1가지 이상의 잘못된 목격자 증언 결과이며, 무고한 피고인들이 여러 해 동안 감옥에서 수감한 후에 DNA검사를 통해 무죄임이 밝혀졌다(Connors, Lundregan, Miller, & McEwan, 1996). 또한 Scheck, Neufeld와 Dwyer(2003)의 연구에서는 목격자 증언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DNA검사를 통해 무죄가 확정된 경우는 62건이었으며, 이중 8건에서 피고인이 사형선고를 받았었다.

이러한 목격자 증언으로 인한 오심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다. 여러 대안 중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목격자 증언과 관련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 제시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목격자 증언과 관련된 실무 관계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목격자 증언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와 가이드라인 제작 과정

미국의 목격자 증언 연구자들은 목격자가 용의자의 범인식별 절차과정 중 주의해야 할 사항을 포함한 논평을 작성하였고(Wells 1978), 1999년 미국 법무성의 국립사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justice)는 경찰, 검사, 변호사 그리고 심리학자들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 목격자증언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Technical Working Group for Eyewitness Evidence; TWGEE, 2003). 가이드라인 제시의 가장 주된 목표는 법 집행관들이 목격자 증언관련 증거들의 보존과 범인식별 과정에 대한 절차를 향상시키

기 위함인데(TWGEE, 1999),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목격자증언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및 기억 관련 연구들과 이 연구들에 대한 목격자 증언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목격자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현상에 대한 목격자 증언 전문가들의 의견은 Kassir, Ellsworth와 Smith에 의해서 1989과 2001년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목격자 증언에 대해 최소한 한 권 이상의 책 혹은 한 챕터 이상의 챕터를 작성했거나 전문 학술지에 한 편이상의 논문을 실었으며, 이들 중 78%가 최소한 한 번 이상 법정에서 목격자의 증언에 대한 평가를 의뢰를 받았었다(Kassir, Ellsworth, & Smith, 2001). 이 연구에서 전문가들은 목격자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요인 및 현상들이 실제 법정에서 목격자를 평가하기 위한 요소로서 충분히 신뢰할 만한지에 대해서 평가하였다(Kassir 등, 1989, 2001). 이 두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목격자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현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신뢰도를 비교한 결과, 전문가들은 ‘질문의 표현(wording)’, ‘라인업 진행방법 (lineup instructions)’, ‘목격자에 대한 태도와 기대 (attitudes-expectations)’는 90%이상으로 높았고, ‘자신감과 정확성의 관계 (confidence-accuracy)’ ‘망각곡선 (forgetting curve)’, ‘노출시간(exposure time)’, 그리고 ‘무의식적 전이(unconscious transference)’에 대해서 80%이상으로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각각의 요인에 대한 설명은 표 1을 참조하시오). 이와 더불어 2001년 연구에 추가된 항목인 ‘자신감의 가변성(confidence malleability)’, ‘범인 식별용 사진 편향 (mugshot-induced bias)’, ‘아동의 피압시성(child suggestibility)’, ‘취한 정도 (alcohol

intoxication)’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90% 이상의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취합하는 이유는, 같은 요인에 대해서 다루는 연구라고 하더라도 연구들 간에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며, 각 개별 요인들에 대한 배경 연구들의 부족으로 인해 시대에 따라서 각 요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Kassir 등이 1989년에 연구할 당시 ‘흥기효과’ (범인의 흥기소지 여부는 범인 얼굴에 대한 목격자의 정확한 식별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 가능한 연구들이 많지 않았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흥기 효과’가 있다는 측과 없다는 측이 반반으로 나뉘었지만, 이후 ‘흥기효과’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연구들이 ‘흥기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서, 전문가들 사이에 ‘흥기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해졌다(87%). 이 연구 결과는 목격자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개별 연구자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수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요인 및 현상들이 어떻게 목격자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설명 및 개별 연구들에 대한 구체적 소개는 본 연구의 논의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기로 한다.

관계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제공

목격자의 잘못된 증언에 따른 오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판사들 뿐 만 아니라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 및 검사와 범인식별 절차에 관계된 경찰 등을 대상으로

목격자 증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여러 나라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목격자 증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되었지만, 주로 법학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김지영과 김시업, 2006; 백승민, 2007; 조광훈, 2008; 김종길, 2010; 홍기원과

표 1. Kassin, Ellsworth와 Smith(1989, 2001)의 연구에서 전문가들이 목격자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현상들 중 80%이상의 신뢰성 받은 요인 및 현상.

주 제	설 명
1. 라인업 진행방법 (lineup instructions)	라인업이나 사진열에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이 용의자인지 알고 있는 관계자(eg, 경찰)는 라인업이나 사진열 실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2. 노출시간 (exposure time)	목격자가 사건을 덜 목격했을수록, 그 목격자는 사건에 대해서 덜 기억 할 것이다.
3. 망각 곡선 (forgetting curve)	사건에 관한 정보를 망각하는 비율은 사건 직후에 가장 높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
4. 자신감과 정확성 관계 (confidence-accuracy)	증언의 정확성은 그 목격자의 확신에 비례하지 않는다.
5. 자신감의 유연성 (confidence malleability)	증언에 대한 목격자의 확신은 범인식별의 정확성과 상관없는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6. 질문 표현 (wording questions)	목격자의 사건에 대한 증언은 질문에 어떤 단어가 포함되는 지에 따라서 영향 받을 수 있다.
7. 무의식적 전이 (unconscious transference)	목격자들은 때때로 다른 상황에서 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한다.
8. 태도와 기대 (attitudes-expectations)	사건에 대한 목격자의 지각과 기억은 그 목격자의 태도나 기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9. 취한 상태 (alcohol intoxication)	취한 상태는 목격자의 사건이나 사람을 기억해내는 능력을 손상시킨다.
10. 범인 식별용 사진 편향 (mugshot-induced bias)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들 중 용의자의 사진이 제시된 경우 추후 라인업에서 증인이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11. 아동의 피압시성 (child suggestibility)	어린 아이들은 성인들보다 질문자의 제안, 또래압력 그리고 다른 사회적 영향에 더 취약하다.
12. 라인업 제시 형식 (presentation format)	라인업에서 진범이 빠져 있을 경우, 모든 용의자들이 차례로 제시되었을 때보다 동시에 제시되었을 때, 증인들은 용의자들 중 누군가를 범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더 높다.

주. ‘자신감과 정확성 관계’와 ‘자신감의 유연성’은 서로 개별적인 개념임. ‘자신감과 정확성 관계’는 목격자의 정확성은 목격자의 자신감 수준과 상관없음을 뜻하며, ‘자신감의 유연성’은 목격자의 증언에 대한 자신감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변동됨을 뜻함.

이보영, 2011). 이 연구들은 주로 목격자 증언의 정확성 제고방안, 형사절차에 있어서 범인 식별에 관한 연구, 경찰수사에 있어서 범죄용의자 식별의 정확도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목격자증인의 범인식별 진술의 신빙성 및 수사기관의 범인식별 진술 및 절차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루었다. 그런데 판사가 법적 판단 과정에서 목격자의 증인채택 여부 및 목격자 증언의 정확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판사들의 목격자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지식 수준이나 목격자 증언에 대한 인식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외국에서는 157명의 노르웨이 판사와 160명의 미국 판사의 목격자 증언에 관한 비교 연구 결과, 노르웨이 판사들이 몇 가지 측면에서 목격자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지식 수준이 미국에 비해 높지만, 대체적으로 두 국가의 판사들 모두 목격자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Magnussen, Wise, Raja, Safer, Pawlenko & Stridbeck, 2008).

170명의 중국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에서, 중국판사들이 미국판사들 보다 목격자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았지만, 두 국가 판사들 모두 목격자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다는 것이 발견되었다(Wise & Safer, 2009).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더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목격자 증언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목격자 증언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장·단기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내

용 파악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에서도 판사들의 목격자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지식 수준과 목격자 증언에 대한 인식에 관한 실증적 이해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58명의 한국 판사, 170명의 중국 판사, 160명의 미국 판사, 157명의 노르웨이 판사를 대상으로 목격자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지식 수준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 비교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판사들뿐만 아니라, 법집행 과정 및 제도 안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의 목격자 증언에 대한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목격자 증언에 대한 평가 설문지는 Wise와Safer(2004)가 만들었고, 노르웨이, 미국, 중국 판사들을 대상으로 사용했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목격자 증언에 대한 14가지의 평가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항목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국가별 판사들의 참여인원, 연령, 성별, 임용기간, 성별은 표 2에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에 포함 된 중국판사수는 총 170명이며 평균 연령은 38.6세 ($SD=6.1$)로 연령 범위는 26세에서 59세이고 남자는 119명, 여자는 47명이었다. 평균 판사 임용기간은 10.5년 ($SD=7.5$)이다. 판사들 중 14명(8%)는 검사 출신이며, 12명(7%)는 변호사 출신이었고, 4명(2%)는 검사와 변호사로 활동을 했었으며, 139명(82%)는 바로 판사로 임용

표 2. 4개국 판사들의 경력 및 인구학적 특성

국가	참여 인원	연령(세)		성별(명)		판사임용 기간(년)	기타 경력(년)
		평균	범위	남	여		
중국	170	38.59 (SD=6.1)	26~59	119	47	10.46 (SD=7.5)	검사: 14(8%) 변호사: 12(7%) 검사 및 변호사: 4(2%)
미국	160		미기재			12.48 (SD=8.0)	검사: 22(14%) 변호사: 42(26%) 검사 및 변호사: 57(36%) 법관 훈련기간: 14(SD=6.9) 형법 훈련 무경험자: 39(24%)
노르웨이	157	50.23 (SD=미기재)	28~69	107	49	9.11 (SD=6.7)	검사: 20.5% 변호사: 17.9% 검사 및 변호사: 12% 형법 훈련 무경험자: 50%
한국	58	40.63 (SD=6.5)	28~56	35 미기재: 10	13	11.13 (SD=5.6)	지방법원 소속: 49(84.5%) 고등법원 소속: 4(6.9%) 사법연수원 소속: 4(6.9%) 미기재: 1명(1.7%)

되었다.

미국판사는 총 160명이며 평균 14년 ($SD=6.9$) 동안 법 관련 훈련을 받았으며, 평균 판사 임용기간은 12.48년($SD=8$)이다. 미국판사 중 22명 (14%)는 판사로 임용되기 전 검사로 활동하였고, 42명 (26%)는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57명 (36%)은 검사와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39명 (24%)는 형법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았다. 미국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자들은 설문지에 참여자의 성별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지 않았다.

노르웨이판사는 총 157명이며, 평균 연령은 50.2세로 연령 범위는 28에서 69세이다. 이들의 평균판사임용기간은 9.1년 ($SD=6.7$)이며, 평균 법 관련 훈련 기간은 13.65년 ($SD=7.2$)이

다. 참여한 노르웨이 판사의 20.5%는 판사로 임용되기 전에 검사였고, 17.9%는 변호사였으며, 12%는 판사로 임용되기 전 검사 혹은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았다. 50%는 형법관련 경험이 없었다. 미국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 판사집단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한 연구자들은 설문지에 참여자의 성별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지 않았다.

한국 판사의 경우 총 58명의 판사가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전체 58명 중 10명은 성별과 생년을 표기한지 않아 10명을 제외한 4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자는 35명이고, 여자는 13명이었다. 평균연령은 40.6세 ($SD=6.5$)였고 범위는 28세에서 56세이다. 한국 판사의 경우 평균 판사임용기간은 11.13년($SD=$

5.6)이며, 지방법원 소속 판사는 49명 (84.5%), 고등법원 소속 판사는 4명(6.9%), 사법연수원 소속 판사는 4명 (6.9%)이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 된 4개국 판사들의 데이터 중 미국, 중국 그리고 노르웨이 판사들의 원자료(raw data)는 이전에 미국, 노르웨이, 중국 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Wise로부터 이메일로 전달 받아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은 각각 Wise와 Safer(2004), Magnussen 등(2008) 그리고 Wise, Gong, Safer와 Lee(2010)에 의해 연구되었다.

한국 판사들의 경우 58명 중 30명은 2011년 현재 사법연수원에 재직 중인 판사에게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전달하였고 사정으로 인

해 자신이 설문에 응답하지 못할 경우엔 다른 동료판사가 설문에 응하였다. 설문에 대한 회신은 이메일 혹은 프린트 된 설문지로 받았으며, 나머지 28명은 2011년 법관연수에 참여한 판사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설문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목격자 증언에 대한 평가 설문지는 미국·중국·노르웨이 판사들을 대상으로 사용했던 Wise와 Safer(2004)가 만든 목격자 증언에 대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영어 설문지로부터 한국어 설문지로의 번역은 한국어 및 영어에 능통한 대학원생 두 명이 각각 1차적으로 번역 한 후, 서로 번역 된 설문지를 비교·검토하였다. 이후 검토된 번역본을 두 언어에 능통한 또 다른 대학원생이

표 3. 목격자 증언에 대한 14가지의 평가 항목과 항목에 대한 설명

주 제	설 명
1. 모자효과	범인이 범행 도중 모자를 쓰지 않았던 경우보다 모자를 썼던 경우, 그 범인을 알아보기가 훨씬 더 어렵다.
2. 세부사항	증언의 정확성은 목격자가 해당사건과 관련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회상해내는 그의 능력에 비례하지 않는다.
8. 흉기 효과	범인의 흉기소지 여부는 범인 얼굴에 대한 목격자의 정확한 식별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12. 변호사의 지식	변호사들은 목격자 증언과 관련된 대부분의 요인들이 증언의 정확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지 않다.
13. 배심원의 지식	배심원들은 목격자 증언과 관련된 대부분의 요인들이 증언의 정확도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알고 있지 않다.
14. 배심원 목격자 구분	배심원들은 정확한 목격자 증언과 부정확한 목격자 증언을 구분할 수 있다.

주) ‘자신감과 정확성 관계’와 ‘자신감의 유연성’은 서로 개별적인 개념임. ‘자신감과 정확성 관계’는 목격자의 정확성은 목격자의 자신감 수준과 상관없음을 뜻하며, ‘자신감의 유연성’은 목격자의 증언에 대한 자신감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변동됨을 뜻함.

최종 검수하였다. 설문지의 질문 중 한국법제도와 맞지 않는 부분은 설문에서 제외했으며, 이 설문지는 목격자 증언에 대한 14항목을 포함하고 있다(부록 참조).

다른 국가에서 수집된 자료와 질문의 유형을 일치하기 위해서 표 1에서 제시된 ‘노출시간(exposure time)’, ‘질문표현(wording questions)’, ‘무의식적 전이(unconscious transference)’, ‘취한 상태(alcohol intoxication)’ 그리고 ‘아동의 피암시성(child suggestibility)’에 대한 항목은 제외하였으며, 8항목 외에 추가적인 6항목에 대해서는 표 3에 제시되었다.

각 항목은 5점 척도(‘전적으로 동의’부터 ‘전적으로 반대’)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14개의 항목 중 5개 항목은 배심원들이 목격자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판사들의 생각을 묻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 항목은 연구에서 14개의 항목 중 배심원의 목격자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하는 5개의 항목(표 1의 7-11주제)을 ‘목격자 증언과 관련한 배심원의 지식정도에 대한 평가(Juror-donot-know scale)’를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판사들의 목격자 증언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4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판사들의 인구학적 특성 및 경력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이 포함되었다. 14개의 항목 중 8개 항목(‘증언에 대한 태도와 기대’, ‘사건 후 정보효과’, ‘자신감과 정확성 관계’, ‘자신감의 유연성’, ‘무기효과’,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에 대한 편향성’, ‘라인업 제시 효과’ 그리고 ‘망각곡선’)에 대한 정답 평가 근거는 Kassin, Tubb, Hosch와 Memon(2001)가 64명의 목격자 증언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Kassin 등(2001) 연구에서 목격자 증언 전문가의 80%가

법정에서 목격자 증언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정답이 있다고 확인되었다. 나머지 14개 중 6개의 항목 중 ‘모자효과’는 Cutler와 Penrod(1995), Cutler, Penrod와 Martens(1987)의 연구결과, ‘세부사항’은 Cutler와 Penrod(1995), Wells와 Leippe(1981)의 연구결과, 라인업 제시형식 Steblay, Dysart와 Fulero(2003) 및 Wells, Small, Penrod, Malpass, Fulero와 Brimacombe(1998)의 연구결과, ‘변호사의 지식’은 Wise, Pawlenko, Safer와 Meyer (논문 발표예정), ‘배심원의 지식’은 Schmechel, O’Toole, Easterly 와 Loftus (2006) 그리고 ‘배심원 목격자 구분’은 Lindsay, Wells와 O’Connor (1989) 및 Lindsay, Wells와 Rumpel(1981)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설문지가 작성되고 정답이 정해졌다.

결 과

다른 나라 판사들의 목격자 증언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전 3개국에서 분석했던 방식으로 ‘전적으로 동의’와 ‘동의’는 합쳐서 분석되었으며 ‘전적으로 반대’와 ‘반대’는 합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판사들의 항목에 대한 응답 분포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글의 간결성을 위해서 목격자 증언에 대한 주제(예, ‘모자효과’)와 이에 대한 설명(예, 범인이 범행 도중 모자를 쓰지 않았던 경우보다 모자를 썼던 경우, 그 범인을 알아보기가 훨씬 더 어렵다)을 의미할 경우, 표 1에 제시된 주제인 ‘모자효과’로 표기하였다.

목격자 증언과 관련된 주제 및 요인

목격자 증언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4개국

판사들의 항목 당 정답률은 표 4에 제시하였으며, 4개국 판사들의 각 항목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응답 빈도율은 표 5에 제시하였다. 한국 판사의 경우 14항목 중 5항목에 대해 80%이상 정답을 제시하였으며 항목에 대한 정답률의 범위는 18-9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르웨이 판사와 가장 유사한 결과 패턴을 보이는데, 노르웨이 판사의 경우도 80% 이상 정답률을 나타낸 항목은 14항목 중 5항목이었고, 정답률의 범위는 31-98%로 나타났다. 미국 판사의 경우 80%이상 정답률을 나타낸 항목은 3항목이며 정답률의 범위는 31-94%로 나타났고, 중국 판사의 경우 1개의 항목에 대해서만 80%이상의 정답률을 보였으며, 정답률의 범위는 11-88%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노르웨이 판사와 한국 판사 그리고 미국

판사의 경우 모두 ‘사건 후 정보효과’와 ‘자신감의 유연성’ 항목에서는 높은 정답률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과 정확성의 관계’ 항목에서는 세 집단 모두 정답률이 낮았다는 점이다. 이 결과는 자신감과 정확성에 대해 연구 대상이 된 나라의 판사들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항목은 앞서 언급된 두 항목으로부터 추리해 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사건 후 정보효과’와 ‘자신감의 유연성’ 효과가 목격자 증언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다면 ‘자신감과 정확성의 관계’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도 높은 정답률을 보였어야 한다(Magnussen 등, 2008). 그 이유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건 후 정보효과’란 사건에 대한 목격자 증언에는 자신이 본 것 뿐 만 아니라 제3자 혹

표 4. 목격자 증언과 관련 된 질문에 대한 4개국 판사들의 항목 당 정답률

주 제	한 국	미 국	중 국	노르웨이
1. 모자효과	86	44	71	55
2. 세부사항	18	31	36	31
3. 증언에 대한 태도와 기대	85	94	88	98
4. 라인업 진행	90	62	67	84
5. 사건 후 정보 효과	78	84	64	94
6. 자신감과 정확성 관계	22	31	23	31
7. 자신감의 유연성	88	89	68	85
8. 흥기 효과	69	69	48	68
9. 범인 식별용 사진 편향	84	74	64	84
10. 라인업 제시 형식	61	19	44	38
11. 망각 곡선	40	31	40	51
12. 변호사의 지식	21	41	8	47
13. 배심원의 지식	46	64	11	73
14. 배심원 목격자 구분	34	39	30	40
15. 목격자증언을 토대로 한 유죄판결 도의성	38	48	58	32

은 다른 경로를 통해 나중에 얻은 정보도 종종 포함된다는 것인데 설문 결과는 판사들이 이를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감의 유연성’이란 증언에 대한 목격자의 확신은 범인 식별의 정확성과 상관없는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판사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결과가 얻어졌다. 이 두 항목을 종합해보면, 증언을 하는 사람의 정확성이 자신감과 무관할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판사의 72% (42명)가 두 항목에 대해서 정답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자신감과 정확성’ 항목에 대해 정답을 제시한 판사는 28%인 12명에 불과했다. 이 결과는 판사들이 두 항목 각각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종합하면 추리해 낼 수 있는 항목임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항목에 대한 나라 간의 정답률(항목 당 정답률)을 비교해보면, ‘자신감과 정확성 관계’(χ²(3)=5.72, p>.05)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 대한 정답률이 4개국 판사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증언에 영향을 미치

표 5. 목격자 증언 관련 항목에 대한 4개국 판사들의 항목에 대한 응답의 빈도율(*은 옳은 답을 의미)

주 제	한국 미국 중국 노르웨이				한국 미국 중국 노르웨이				한국 미국 중국 노르웨이			
	동의%				동의 혹은 반대 아님 %				반대%			
1. 모자효과	86*	44	71	55	10	50	11	50	3	11	18	11
2. 세부사항	51	57	55	30	32	20	9	20	18*	31	36	31
3. 태도와 기대	85*	94	88	98	14	4	4	4	2	1	7	1
4. 라인업 진행	90*	62	67	84	10	18	1	18	0	8	23	9
5. 사건 후 정보 효과	78*	84	64	94	16	8	8	8	7	0	29	0
6. 자신감과 정확성 관계	41	34	71	22	36	34	34	34	22*	31	23	31
	일반적으로 사실(%)				일반적으로 거짓(%)				모름(%)			
7. 자신감의 유연성	88*	89	68	85	0	1	20	1	12	9	12	14
8. 흥기 효과	69*	69	48	68	10	4	33	5	21	28	18	27
9. 범인 식별용 사진 편향	84*	74	64	84	2	4	24	3	14	21	12	13
10. 라인업 제시 형식	61*	19	44	38	5	14	35	7	34	66	22	55
11. 망각 곡선	40*	31	40	51	35	25	47	24	26	44	14	25
	동의%				동의 혹은 반대 아님 %				반대%			
12. 변호사의 지식	40	32	85	12	40	28	7	41	21*	41	8	47
13. 배심원의 지식	5	10	81	3	49	26	8	24	46*	64	11	73
14. 배심원 목격자 구분	12	29	60	8	55	33	9	52	34*	39	30	40
15.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한 유죄판결 도의성	24	23	34	36	38	29	9	32	38	48	58	32

는 태도와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4국가의 판사들 모두 80%이상의 높은 정답률은 보였다. 반면에, ‘세부사항’, ‘자신감과 정확성 관계’, ‘변호사의 목격자 증언에 대한 평가’, 그리고 ‘배심원 목격자 구분에 대한’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4개 국가의 판사 모두 50%이하의 정답률을 나타냈다. 한국 판사의 경우, ‘모자효과’, ‘라인업 진행’ 그리고 ‘범인 식별용 사진 편향’ 그리고 ‘라인업 제시형식’ 항목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나타냈다. ‘모자효과’와 ‘라인업 진행’이 목격자 증언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항목에 대한 정답률은 그 다음으로 정답률이 높은 판사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효과’에 대한 정답률은 그 다음으로 정답률이 높은 중국 판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chi^2(1)=5.56, p < .05$), ‘라인업 진행’에 대한 정답률의 경우 그 다음으로 높은 노르웨이 판사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chi^2(1)=11.15, p < .001$), ‘범인 식별용 사진

편향효과’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노르웨이 판사들과 정답률이 차이가 없었다. 끝으로 ‘라인업 제시형식’에 대해서는 그 다음으로 정답률이 높은 중국 판사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1)=3.95, p < .05$).

4개국 판사들의 목격자 증언에 대한 14개의 항목에 대한 평균 정답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3, 52)=607.07, p > .05$, 그림 1 참조). Tukey post-hoc 테스트를 사용하여 사후검증 한 결과 모든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_s > .05$). 하지만, 1종 오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Family Wise Error Rate; FWER), 국가별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 판사의 경우 14개의 항목 중 평균 정답 항목 수는 7.93($SD=2.07$, 정답률 58.7%)으로 노르웨이 판사($M=8.80, SD=2.43$, 정답률 62.8%)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t(213)=-2.42,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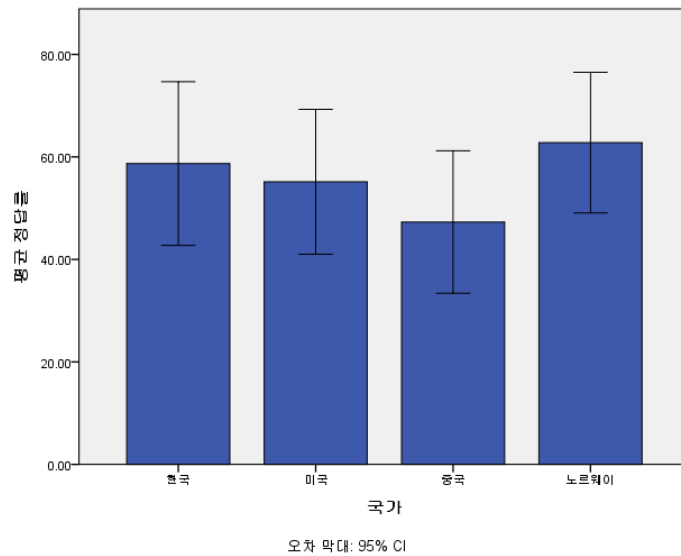


그림 1. 목격자 관련 질문에 대한 4개국 판사들의 평균 정답률(단위 %)

미국 판사의 평균 정답 항목 수는 7.66 ($SD=2.49$, 정답률 55.1%)으로 한국 판사보다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216)=-.75$, $p>.05$). 끝으로, 중국 판사의 경우 평균 정답 항목 수는 6.61 ($SD=1.94$, 정답률 47.3%)을 보였고, 이 결과는 미국 판사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328)=-4.26$, $p<.01$).

판사재직기간과 정답률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미국, 중국 그리고 노르웨이 판사의 경우 재직기간과 설문지의 정답률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Magnussen 등, 2008; Wise & Safer, 2004). 이와 더불어, 한국 판사의 경우도 정답률의 정도는 판사재직기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음이 나타났다 ($r=0.05$, $p>.05$), 즉, 판사로 재직 한 기간과 목격자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효과에 대해 아는 정도(정답률)가 관련이 없음을 시사한다. 또한 ‘100개의 중죄(흉악범)에 대한 잘못된 유죄판결 중, 부분적으로나마 목격자 오증언으로 그러한 유죄판결을 내리게 되는 빈도’에 대한 한국 판사들의 생각은 전체 14항목에 대한 정답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0.09$, $p>.05$). 이와 더불어,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목격자 증언만을 토대로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항목과 정답률과의 상관관계는 부적상관관계, 즉 정답률이 높을수록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목격자 증언만을 토대로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0.25$, $p>.05$).

또한, 정답률과 ‘변호사들은 목격자 증언과 관련된 대부분의 요인들이 증언의 정확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는지’($r=0.18$,

$p>.05$)와 ‘배심원들은 목격자 증언과 관련된 대부분의 요인들이 증언의 정확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는지’($r=0.25$)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두 $>.05$).

중국 판사의 경우, ‘재직기간’($r=-0.11$, $p>.05$), ‘100개의 중죄(흉악범)에 대한 잘못된 유죄판결 중, 부분적으로나마 목격자 증언의 오류로 그러한 유죄판결을 내리게 되는 빈도’에 대한 생각($r=0.08$, $p>.05$),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목격자 증언만을 토대로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r=0.07$, $p>.05$), ‘변호사들은 목격자 증언과 관련된 대부분의 요인들이 증언의 정확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는지’($r=-0.12$, $p>.05$), 그리고 ‘배심원들은 목격자 증언과 관련된 대부분의 요인들이 증언의 정확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는지’($r=-0.09$, $p>.05$)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두 $>.05$).

반면에, 미국 판사의 경우 위에 언급된 모든 요인들과 14개의 항목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07$, -0.33 , 0.18 , 0.32 그리고 0.48). ‘100개의 중죄(흉악범)에 대한 잘못된 유죄판결 중, 부분적으로나마 목격자 증언의 오류로 그러한 유죄판결을 내리게 되는 빈도’에 대한 4개국 판사들의 생각을 Analysis of Variance (ANOVA) test로 분석한 결과, 4개국 판사들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465)=50.42$, $p<.001$). Tukey post-hoc 테스트를 사용하여 사후검증 한 결과, 노르웨이 판사가 평균 37.86($SD=23.3$)으로 가장 높았으나 그 다음으로 높은 미국 판사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p<.05$, 그림 2 참조).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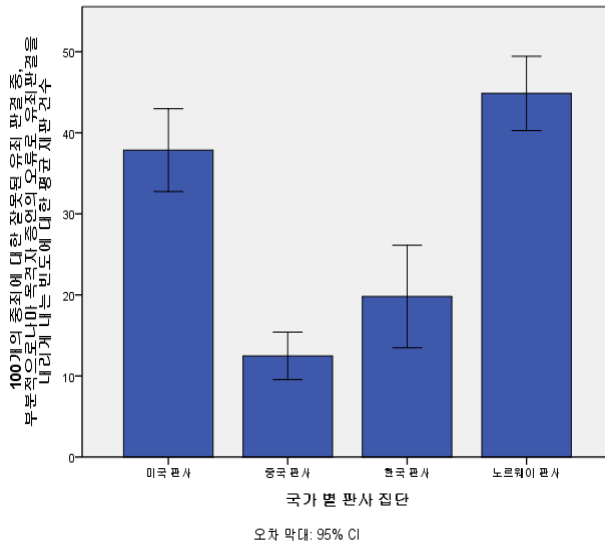


그림 2. 100개의 중죄(흉악범)에 대한 잘못된 유죄판결 중, 부분적으로나마 목격자 증언의 오류 그러한 유죄판결을 내리게 되는 빈도에 대한 4개국 판사들의 생각

만 한국 판사와 중국 판사는 노르웨이 판사와의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이러한 차이는 미국 판사와의 비교에서도 나타났다($p < .001$).

이전 중국 판사와 미국 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4개의 항목 중 배심원의 목격자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하는 5개의 항목(표 1의 7-11주제)을 ‘목격자 증언과 관련한 배심원의 지식정도에 대한 평가(Juror-do-not-know scale)’를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한국 판사는 1.26($SD=1.51$)였고, 척도에 대한 Cronbach alpha로 측정된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0.74로 비교적 양호하였다. 미국 판사의 경우 1.56($SD=1.71$), Cronbach alpha는 0.79였고, 중국 판사의 경우 0.45($SD=0.94$)이고 Cronbach alpha는 0.68이었으며, 노르웨이 판사의 경우는 0.74($SD=1.37$)이고, Cronbach alpha는 0.77이었다. 14항목에 대한 정답률과 ‘목격자 증언과 관련한 배

심원의 지식정도에 대한 평가(Juror-do-not-know scale)’를 측정하는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중국 판사의 경우 정답률과 ‘목격자 증언 관련 지식에 대한 배심원은 모름의 정도’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r(168)=-0.21$, $p < .01$), 미국 판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58)=0.19$, $p < .01$). 반면에 한국 판사의 경우 두 척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56)=0.18$, $p > .05$). 이러한 결과는 미국 판사의 경우 목격자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많이 알수록 배심원들의 목격자 증언에 대한 지식 수준에 대해서 회의적이지만(Wise & Safer, 2004), 중국 판사의 경우 목격자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많이 알수록 배심원들의 목격자 증언에 대한 지식수준에 대해서 덜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Wise 등, 2010).

한국 판사의 경우, 판사들의 목격자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아는 정도가 배심원들의 목격자 증언의 지식정도에 대한 판단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격자 증언 관련 교육에 대한 판사들의 인식

목격자 증언 관련 교육에 관한 판사들의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국 판사의 경우 93%가 목격자 증언에 대해서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미국과 중국 판사는 각각 75%, 12%만이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국과 미국 판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1)=5.67$, $p<.01$). 또한 목격자 증언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예, '판사들이 목격자 증언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다', '판사들이 목격자 증언에 대해서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판사들이 목격자 증언과 관련하여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과 14개의 목격자 증언 관련 질문에 대한 정답률을 살펴보았다. 미국 판사와 노르웨이 판사의 경우, '판사들이 목격자 증언에 대해서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다른 응답을 한 두 집단에 비해서 정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agnussen 등, 2008).

반면에, 중국 판사의 경우 '판사들이 목격자 증언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다른 응답을 한 두 집단 보다 정답률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판사의 경우는 '판사들이 목격자 증언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응답($M=9.0$)이 다른 응답을 한 두 집단(판사들이 목격자 증언에

대해서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판사들이 목격자 증언과 관련하여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에 비해서 높았지만, 위와 같이 응답한 판사는 1.7% (1명)에 해당한다. 또한, '판사들이 목격자 증언과 관련하여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자($M=8.4$)가 그 다음으로 높았으나 응답자의 수가 5.4% (3명)이었고, '판사들이 목격자 증언에 대해서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응답($M=7.9$)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판사들이 목격자 증언에 대해서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92.9%(52명)가 응답하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중국, 노르웨이 판사들의 목격자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아는 정도와 인식에 대해서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목격자 증언과 관련된 주제 및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한국 판사는 14개의 항목 중 5개의 항목에 대해서 80%이상의 정답률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가장 높은 정답률을 제시한 노르웨이 판사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응답 패턴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과 중 주목해서 봐야 할 사항 중의 하나는 한국, 미국, 노르웨이 판사 모두 '사건 후 정보효과'와 '자신감의 유연성'에 대해서 높은 정답률을 보였지만, '자신감과 정확성의 관계'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세 국가의 판사들이 모두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는 결과이다. ‘사건 후 정보효과’와 ‘자신감의 유연성’ 이 두 항목을 종합해보면, 증언을 하는 사람의 정확성이 자신감과 무관할 가능성을 추리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판사 중 두 항목에 대해서 정답률을 보인 경우는 42명인 72.4%이며 이들 중 ‘자신감과 정확성’ 항목에 대해 정답을 제시한 판사는 12명인 28%에 불과했다. 이 결과는 판사들이 두 항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리하면 맞출 수 있는 항목임에도 틀리게 반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 판사의 경우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높은 정답률을 보였지만, ‘증언의 정확성은 목격자가 해당사건과 관련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회상해내는 그의 능력에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세부사항’과 관련된 정보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판사들의 설문에 대한 정답률과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알아 본 결과, 4개국 판사 모두 판사재직기간과 14개의 항목에 대한 정답률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판사로 재직할 기간과 목격자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효과에 대해 아는 정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판사의 경우, ‘100개의 중죄(흉악범)에 대한 잘못된 유죄판결 중, 부분적으로나마 목격자 증언의 오류로 그러한 유죄판결을 내리게 되는 빈도’에 대한 생각과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목격자 증언만을 토대로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변호사들은 목격자 증언과 관련된 대부분의 요인들이 증언의 정확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는지’, ‘배심원들은 목격자 증언과 관련 된 대부분의 요인들이 증언의 정확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는지’는 ‘정답률’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국 판사의 경우 위에 언급된 모든 요인과 정답률이 상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점은, 한국 판사의 경우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는 없었지만 정답률이 높은 판사일수록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목격자 증언만을 토대로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에 동의하여, 미국과 중국 판사의 경우와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또한 한국 판사의 경우 ‘목격자 증언과 관련된 배심원의 지식정도에 대한 평가(Juror-do-not-know scale)’에 대한 판단과 정답률은 상관관계가 없었다. 하지만 중국 판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답률이 높을수록 배심원의 목격자 증언 관련 지식 수준에 대해서 덜 회의적인 반면, 미국 판사의 경우 유의미하지 않지만 정답률이 높을수록 목격자 증언에 대한 배심원의 지식수준에 대해서 더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 미국, 그리고 중국이 서로 대조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두 가지 경우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목격자 증언과 관련된 배심원의 지식수준의 판단은 판사들의 목격자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아는 정도와 무관하게 목격자 증언 자체에 대한 판사들의 개인적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국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배심원제도가 시작되었고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배심원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축적된 반면, 중국은 배심원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한국의 경우 배심원제도

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 간의 제도적 차이가 판사들의 배심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목격자 증언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국 판사의 경우 정답률과 교육의 필요성과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미국과 노르웨이 판사의 경우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다른 응답을 한 집단에 비해서 정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Wise & Safer, 2004; Magnussen 등, 2008). 이러한 결과는 첫째, 한국 판사의 경우 응답자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92.9%가 목격자 증언에 대해서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하여 정답률과는 상관없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이렇듯 대다수의 판사들이 목격자 증언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과 체계적인 목격자 증언 관련 교육이 부재한 상황을 반증한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실용적 함의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

종합적으로 한국 판사는 목격자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노르웨이 판사 보다는 근소한 차이로 낮은 점수를 보이기는 하지만 중국과 미국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적 수준의 순위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목격자 증언과 관련된 된 요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이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미국, 중국 그리고 노르웨이 판사를 비교한 연구를 수행했던 연구자들은 3개국의 판사들의 목격자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아는 정도를 낮게 평가하였음을 언급한 바 있다(Wise & Safer, 2004;

Magnussen 등, 2008; Wise 등, 2010). 이것은 한국 판사가 비교집단인 미국과 중국 판사 보다 평균 정답률이 높다고 하여 우수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목격자 증언에 대한 오증언의 최소화하고 더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판사들을 대상으로 목격자 증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수사 단계에서도 라인업 진행 방법에 따라서 목격자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형사에 대한 교육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수사 단계에서 목격자 증언의 신빙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2004년 ‘수사기관의 범인식별에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한 적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은 2001. 2. 9. 선고 2000도 4946 판결과 2004. 02. 27. 선고 2003도 7033판결, 2005. 05. 27. 선고 2004도 7363 판결 등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목격자 증언 진행 절차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실제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불분명하며,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에서처럼 목격자의 범인식별절차에 대해 제도적으로 규정하거나 미국에서처럼 목격자 증언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현실적 대안이 구현되지 않고 있다 (조원철, 2009).

이런 상황에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절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직·간접적

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런데 Devenport, Penrod와 Cutler(1997)의 연구에 따르면, 배심원들은 목격자 증언에 대해서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경우 경험과 지식 등의 부족으로 인해 목격자 증언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 잘못된 직감에 의한 판단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인식도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enton, Ross, Bradshaw, Thomas & Bradshaw, 2006; Read & Desmarais, 2009). 이러한 성향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우리나라의 일반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관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판 시작 전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한 목격자 증언에 구체적인 지침 혹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실제 목격자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배심원 집단은 그렇지 않은 배심원 집단보다 더 정확한 판결을 내렸다는 실험적 연구 결과가 있다(Sumner-Armstrong & Newcombe., 2007). 이 연구결과는 목격자 증언에 대한 교육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더 나아가 재판과정에 포함 된 판사, 변호사와 검사들 뿐 만이 아니라 배심원을 대상으로 한 목격자 증언 관련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만, 2011년 말 현재 우리나라 판사 수는 2635명(헌법과 법률상의 총원은 대법관 포함 2858명)인데, 본 연구에 참여한 판사 수는 58명으로 전체 판사수의 2%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한국 판사들의 목격자 증언에 대한 지식수준 및 인식으로서 일반화시키기에 제한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국 판사 및 관련 실무자들의 목격자 증언 교육에 대해 나아갈 방향과 지침 마련을

위한 기초적·사전적 연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인간의 경험을 100% 완벽하게 부호화, 저장 그리고 인출해 내는 것은 현대 기술과 의학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목격자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고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은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축적된 목격자 증언과 관련된 실험적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과학적이고 실용적이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목격자 증언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는 것이다. 또한, 제작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재판에 참여하는 실무자들 뿐만 아니라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되어야겠다.

참고문헌

- 김지영, 김시업 (2006). 목격자 증언의 정확성 제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 김종길 (2010). 경찰수사에 있어서 범죄의뢰자 식별의 정확도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2010.
- 민영성 (2004). 목격자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의 적정하고 신용성 평가를 위한 담보방안, 저스티스, 통권 179, 한국법학원.
- 박종선 (2007). 목격자 진술에 의한 범인식별의 신용성 평가, 중앙법학, 9. 3.
- 백승민 (2007), 형사절차에 있어서 범인식별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102, 한국법학원.
- 이종훈 (2010). 법심리학 관점에서 본 진술증

- 거의 평가방법, 저스티스, 통권, 120, 한국법학원.
- 조원철 (2009). 실무연구: 목격증인의 범인식별과 라인업, 법조, 58, 1
- 홍기원, 이보영 (2011). 목격증인의 범인식별진술의 신빙성: 역사적 함의와 신빙성 제고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43, 195-216.
- Ask, K. & Granhag, P. A. (2005). Motivational sources of confirmation bias in criminal investigations: The need for cognitive closure. *Journal of Investigative Psychology and Offender Profiling*, 2, 43-63.
- Ask, K., & Granhag, P. A. (2007). Motivational bias in criminal investigators' judgments of witness reliabili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7, 561-591.
- Benton, T. R., Ross, D. F., Bradshaw, E., Thomas, W. N., & Bradshaw, G. S. (2006). Eyewitness memory is still not common sense: Comparing jurors, judges, and law enforcement to eyewitness expert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0, 115-130.
- Colwell, L. H. (2005). Cognitive heuristics in the context of legal decision making. *American Journal of Forensic Psychology*, 23, 17-31.
- Connors, E., Lundregan, T., Miller, N., & McEwan, T. (1996). *Convicted by juries, exonerated by science: Case studies in the use of DNA evidence to establish innocence after trial*. Alexandria, VA: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Cutler, B. L. & Penrod, S. D. (1995). *Mistaken identifications: The eyewitness, psychology, and the law*,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utler, B. L., Penrod, S. D., & Martens, T. K. (1987).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eyewitness identifications: Putting context into contex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2, 629-637.
- Czopp, A. M., Monteith, M. J., & Mark, A. Y. (2006). Standing up for a change: Reducing bias through interpersonal confro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 784-803.
- Devenport, J. L., Penrod, S. D., & Cutler, B. L. (1997). Eyewitness identification evidence: Evaluating commonsense evaluation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3, 338-361.
- Frank, M. G., & Ekman, P. (2004). Appearing truthful generalizes across different deception sit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 486-495.
- Garrido, E., Masip, J., & Herrero, C. (2004). Police officers' credibility judgments: Accuracy and estimated 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9, 254-275.
- Goldstein, A. G., Chance, J. E. & Schneller, G. R. (1989). Frequency of eyewitness identification in criminal cases: A survey of prosecutors. *Bulletin of the Psychonomic Society*, 27: 71.
- Halverson, A. M., Hallahan, M., Hart, A. J., & Rosenthal, R. (1997). Reducing biasing effects of judges' nonverbal behavior with simplified jury instruc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 590-598.
- Kassin, S. M., Ellsworth, P. C., & Smith, V. L. (1989). The "general acceptance" of psychological research on eyewitness testimony: A survey of the experts. *American Psychologist*, 44, 1089-1098.
- Kassin, S. M., Ellsworth, P. C., & Smith, V. L.

- (2001). The “general acceptance” of psychological research on eyewitness testimony: A new survey of the experts. *American Psychologist*, 56, 405-416.
- Kassin, S. M., Goldstein, C. C., & Savitsky, K. (2003). Behavioral confirmation in the interrogation room: On the dangers of presuming guilt. *Law and Human Behavior*, 27, 187-203.
- Kassin, S. M., Tubb, V. A., Hosch, H. M. & Memon, A. (2001). On the ‘general acceptance’ of eyewitness research. A study of experts. *American Psychologist*, 56: 405-416.
- Read, J. D. & Desmarais, S. L. (2009). Lay knowledge of eyewitness issues: A Canadian evaluation.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3, 301-326.
- Lindsay, R. C., Wells, G. L. & Rumpel, C. M. (1981). Can people detect eyewitness-identification accuracy within and across situ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6: 79-89.
- Lindsay, R. C., Wells, G. L. and O'Connor, F. J. (1989). Mock-juror belief of accurate and inaccurate eyewitnesse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Law and Human Behavior*, 13, 333-339.
- Magnussen, S., Wise, R. A., Raja, A. Q., Safer, M. A., Pawlenko, N., & Stridbeck, U. (2008). What judges know about eyewitness testimony: A comparison of Norwegian and US judges. *Psychology, Crime & Law*, 14, 177-188.
- Neal, T. M. S., Christiansen, A., Bornstein, B. H. & Rovicheaux, T. R. (2012). The effects of mock juror's belief about eyewitness performance on trial judgements, *Psychology, Crime & Law*, 18: 1, 49-64.
- Scheck, B., Neufeld, P., & Dwyer, J. (2003). *Actual innocence: When justice goes wrong and how to make it right*.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 Schmechel, R. S., O'Toole, T. P., Easterly, C. & Loftus, E. F. 2006. Beyond the ken? Testing jurors' understanding of eyewitness reliability evidence. *Jurimetrics*, 46: 177-214.
- Smith, A. C., & Green, E. (2005). Conduct and its consequences: Attempts at debiasing jury judgments. *Law and Human Behavior*, 29, 505-526.
- Stebly, N., Dysart, J. & Fulero, S. (2003). Eyewitness accuracy rates in police showup and lineup presentations: A meta-analytic comparison. *Law and Human Behavior*, 27, 523-540.
- Sternberg, R. J. (2003). *Cognitive psychology* (3rd edn). Belmont, CA: Wadsworth.
- Sumner-Armstrong, C., & Newcombe, P. A. (2007). The education of jury members: Influences on the determinations of child witnesses, *Psychology, Crime & Law*, 13:3, 229-244.
- Wegener, D. T., Kerr, N. L., Fleming, M. A., & Petty, R. E. (2000). Flexible corrections of juror judgments: Implications of jury instruction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6, 629-654.
- Wells, G. L. (1978). Applied eyewitness testimony research: System variables and estimator variab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546-1557.

- Wells, G. L. and Leippe, M. R. (1981). How do triers of fact infer the accuracy of eyewitness identifications? Using memory for peripheral detail can be mislead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6, 682-687.
- Wells, G. L., Small, M., Penrod, S., Malpass, R. S., Fulero, S. M. and Brimacombe, C.A.E. (1998). Eyewitness identifications procedures: Recommendations for lineups and photospreads. *Law and Human Behavior*, 22, 603-647.
- Wells, G. L., Memon, A., & Penrod, S. D. (2006). *Eyewitness Evidence: Improving its Probative Value*,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 Wise, R. A. & Safer, M. A., (2004). "What U.S. judges know and believe about eyewitness testimony,"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8, 427-443.
- Wise, R. A. & Safer, M. A., (2009). How to Analyze the Accuracy of Eyewitness Testimony in a Criminal Case, *Connecticut Law Review*.
- Wise, R. A., Gong, X., Safer, M. A., & Lee, Y.T. (2010). A comparison of Chinese judges' and US judges' knowledge and beliefs about eyewitness testimony, *Psychology, Crime & Law*, 16: 8, 695-713.
- 1 차원고접수 : 2012. 3. 30.
수정원고접수 : 2012. 5. 28.
최종게재결정 : 2012. 8. 20.

**A Comparison of judges' Knowledge/Beliefs
about Eyewitness Testimony:
Korea, China, Norway, and the USA**

Ko Minjo

Park Jooy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s at identifying the levels of knowledge and beliefs about eyewitness testimony for Korean judges in comparison to those in three other countries: China, Norway, and the USA. Fifty-eight Korean judges have participated in the survey. Results from the Korean judges were compared to those from judges of the three other countries, obtained from previous studies (Magnusse *et al.*, 2008; Wise *et al.*, 2009).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for the Korean judges were lower than Norwegian judges, but higher than those of U.S. judges and Chinese judges. Also, consistent with previous findings related to three other countries, it was found that the Korean judges also had limited knowledge about eyewitness testimony. Thus, to enhance the level of knowledge and beliefs about eyewitness testimony, there is an urgent need for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systematic training programs. After verification of their effectiveness, such programs should be extended to attorneys and prosecutors.

Key words : *eyewitness testimony, judges, Korean, USA, Norway, Chinese*

부 록

Section I

다음 각 진술에 대해 어느 정도로 동의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를 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판에서 목격자가 피고인을 가해자라고 증언 한 경우, 그 증언의 정확성은 그 목격자의 확신에 비례한다.

1	2	3	4	5
전적으로 동의	동의	보통	반대	전적으로 반대

2. 사건에 대한 목격자 증언에는 자신이 실제로 본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증언이나 경찰 또는 대중매체 등으로부터 나중에 얻은 정보도 종종 포함되기도 한다.

1	2	3	4	5
전적으로 동의	동의	보통	반대	전적으로 반대

3. 목격자가 피고인을 가해자라고 증언 할 때, 증언의 정확성은 목격자가 해당사건과 관련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을 회상해 내는 그의 능력에 비례한다.

1	2	3	4	5
전적으로 동의	동의	보통	반대	전적으로 반대

4. 라인업이나 사진열에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이 용의자인지 알고 있는 경관은 라인업이나 사진열 실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1	2	3	4	5
전적으로 동의	동의	보통	반대	전적으로 반대

5. 범인이 범행 도중 모자를 쓰지 않았던 경우보다 모자를 썼던 경우, 그 범인을 알아보기가 훨씬 더 어렵다.

1	2	3	4	5
전적으로 동의	동의	보통	반대	전적으로 반대

6. 배심원들은 정확한 목격자 증언과 부정확한 목격자 증언을 구분할 수 있다.

1	2	3	4	5
전적으로 동의	동의	보통	반대	전적으로 반대

7. 사건에 대한 목격자의 지각과 기억은 그 목격자의 태도나 기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	2	3	4	5
전적으로 동의	동의	보통	반대	전적으로 반대

Section II

8-12 항목은 범인 얼굴에 대한 목격자의 정확한 식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서술입니다(예를 들면, “흥기 소지는 범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목격자의 능력을 저해 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각 요인에 대해 3개의 질문이 주어질 것입니다.

- a. 이 요인에 대한 진술은 일반적으로 참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 b. 보통 배심원이 위 진술을 일반적으로 참 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틀렸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 c.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이, 목격자 증언의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배심원단에게 알려주는 행동(들)을 어디까지 허용하시겠습니까?

8. 범인의 흥기소지 여부는 범인 얼굴에 대한 목격자의 정확한 식별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 a. 위 진술은 _____.
 - 1. 일반적으로 참이다.
 - 2. 일반적으로 거짓이다.
 - 3. 모름.
- b. 배심원들은 위 진술을 _____라고 믿는다.
 - 1. 일반적으로 참이다.
 - 2. 일반적으로 거짓이다.
 - 3. 배심원들은 모른다.
 - 4. 모름
- c. 위 진술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겠습니까?

(1-5번의 보기에 대해서 두 개 이상 O표하셔도 됩니다.)

1. 증인에게 예비 심문을 요청하기
2. 증인에게 반대 심문을 요청하기
3. 전문가에게 전문가 증언을 요청하기
4. 최종 변론에서 논의하기
5. 목격자 증언과 관련하여 배심원 지시를 준비하기
-
6. 모든 행동을 금지시키기
7. 잘 모르겠음

9. 자신의 증언에 대한 목격자의 확신은 신원확인의 정확성과 상관없는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a. 위 진술은 _____.

1. 일반적으로 참이다.
2. 일반적으로 거짓이다.
3. 모름

b. 배심원들은 위 진술을 _____라고 믿는다.

1. 일반적으로 참이다.
2. 일반적으로 거짓이다.
3. 배심원들은 모른다.
4. 모름

c. 위 진술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겠습니까?

(1-5번의 보기에 대해서 두 개 이상 O표하셔도 됩니다.)

1. 증인에게 예비 심문을 요청하기
2. 증인에게 반대 심문을 요청하기
3. 전문가에게 전문가 증언을 요청하기
4. 최종 변론에서 논의하기
5. 목격자 증언과 관련하여 배심원 지시를 준비하기
-
6. 모든 행동을 금지시키기
7. 잘 모르겠음

10.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들 중 용의자의 사진이 제시 된 경우 추후 라인업에서 증인이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a. 위 진술은 _____.

1. 일반적으로 참이다.
2. 일반적으로 거짓이다.
3. 모름

b. 배심원들은 위 진술을 _____라고 믿는다.

1. 일반적으로 참이다.
2. 일반적으로 거짓이다.
3. 배심원들은 모른다.
4. 모름

c. 위 진술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겠습니까?

(1-5번의 보기에 대해서 두 개 이상 O표하셔도 됩니다.)

1. 증인에게 예비 심문을 요청하기
2. 증인에게 반대 심문을 요청하기
3. 전문가에게 전문가 증언을 요청하기
4. 최종 변론에서 논의하기
5. 목격자 증언과 관련하여 배심원 지시를 준비하기

6. 모든 행동을 금지시키기
7. 잘 모르겠음

11. 사건에 관한 정보를 망각하는 비율은 사건직후에 가장 높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

a. 위 진술은 _____.

1. 일반적으로 참이다.
2. 일반적으로 거짓이다.
3. 모름

b. 배심원들은 위 진술을 _____라고 믿는다.

1. 일반적으로 참이다.
2. 일반적으로 거짓이다.
3. 배심원들은 모른다.
4. 모름

c. 위 진술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겠습니까?

(1-5번의 보기에 대해서 두 개 이상 O표하셔도 됩니다.)

1. 증인에게 예비 심문을 요청하기
2. 증인에게 반대 심문을 요청하기
3. 전문가에게 전문가 증언을 요청하기

4. 최종 변론에서 논의하기
5. 목격자 증언과 관련하여 배심원 지시를 준비하기

-
6. 모든 행동을 금지시키기
 7. 잘 모르겠음

12. 라인업에서 진범이 빠져있을 경우, 모든 용의자들이 차례로 제시되었을 때보다 동시에 제시되었을 때, 증인들은 용의자들 중 누군가를 범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더 높다.

a. 위 진술은 _____.

1. 일반적으로 참이다.
2. 일반적으로 거짓이다.
3. 모름

b. 배심원들은 위 진술을 _____ 라고 믿는다.

1. 일반적으로 참이다.
2. 일반적으로 거짓이다.
3. 배심원들은 모른다.
4. 모름

c. 위 진술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겠습니까?

(1-5번의 보기에 대해서 두 개 이상 O표하셔도 됩니다.)

1. 증인에게 예비 심문을 요청하기
2. 증인에게 반대 심문을 요청하기
3. 전문가에게 전문가 증언을 요청하기
4. 최종 변론에서 논의하기
5. 목격자 증언과 관련하여 배심원 지시를 준비하기

-
7. 모든 행동을 금지시키기
 8. 잘 모르겠음

Section III

끝으로 목격자 증언에 대한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과 함께 결과해석에 참고할 수 있는 판사님의 배경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3. 변호사들은 목격자 증언과 관련된 대부분의 요인들이 증언의 정확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다.

1	2	3	4	5
전적으로 동의	동의	보통	반대	전적으로 반대

14. 배심원들은 목격자 증언과 관련된 대부분의 요인들이 증언의 정확도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알고 있다.

1	2	3	4	5
전적으로 동의	동의	보통	반대	전적으로 반대

15.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목격자 증언만을 토대로 유죄가 선고 되어져야 한다.

1	2	3	4	5
전적으로 동의	동의	보통	반대	전적으로 반대

16. 100개의 중죄(흉악범)에 대한 잘못된 유죄판결 중, 부분적으로나마 목격자 증언의 오류로 그러한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는 빈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된 유죄판결 100건 중 _____ 건

17. 판사로 임용 되기 전에 법 관련 업무를 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_____ 년 _____ 개월

18. 판사로 임용 되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

_____ 년 _____ 개월

20. 판사님은 현재 어느 법원 소속 판사이십니까?

- 1. 지방법원
- 2. 고등법원
- 3. 대법원

21. 판사님의 성별과 태어난 년도는 언제 이십니까?

성별 : 남 / 여

태어난 년도 :

22. 아래의 항목 중 목격자 증언과 관련하여 판사님에게 해당되는 것에 O 표시해주십시오.
(복수응답가능 합니다.)

1. 나는 목격자 증언과 관련된 심리학 또는 법학 논문을 읽은 적이 있다.
2. 나는 목격자 증언과 관련된 책을 읽은 적이 있다.
3. 나는 목격자 증언과 관련된 강의나 세미나에 참석했던 적이 있다.
4. 기타 (자세히)
5. 해당 사항 없음.

23. 아래의 항목 중 판사님께서 동의하시는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1. 판사들이 목격자 증언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다.
2. 판사들이 목격자 증언에 대해서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판사들이 목격자 증언과 관련하여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